

보면 다음과 같다.

- △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언론피해구제 제도를 포괄해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단일화 했다.
- △ 종전의 중재제도를 조정과 중재로 구분해서 실질적 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중재위원회의 조정기능을 명시했다.
- △ 인터넷 언론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 △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 반론보도청구 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없이도 정정보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 △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조정 및 중재신청을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 △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언론에 대한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 △ 중재위원의 숫자를 80인 이내에서 90인 이내로 확대했다.

III. 언론중재법의 신설 제도

1.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강조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고, 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에서는 ‘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 인격권의 보장

가) 인격권의 정의

언론중재법은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에서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통해 언론이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인격권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항도 함께 명문화하고 있다.

나) 사망자에 대한 인격권 보장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에 대해서도 새롭게 보장하고 있다.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사망 후 30년까지는 언론피해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3. 언론사내 고충처리인 제도 신설

언론중재법은 제6조에서 옴부즈맨 제도의 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충처리인’ 제도를 신설했다.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각 언론사의 고충처리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고충처리인은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등을 하며, 언론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도 매년 공표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4. 언론사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취업금지 신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죄)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언론사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언론인의 자격을 강화했다. 이 역시 위반했을 때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5. 언론중재위원회의 기구 개선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중재위원의 숫자를 종전 40인 이상 80인 이내였던 것을 40인 이상 90인 이내로 늘렸으며, 위원의 추천자격도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중재위원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또 중재부에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을 두되, 지금까지 법관만이 중재부의 장을 맡도록 했던 것을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의 장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도 중재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중재위원은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공무원, 정당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의 후보로 등록된 자,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공무원 가운데서 위촉할 수 없으며 중재위원이 관련된 중재사건이 있을 경우 제척사례를 명시하고 중재위원 기피신청제도를 만들었다.

위원회의 활동결과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IV.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구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언